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농산물안전분석실 신규 개소에 따라 분석실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운영 지원(안 제1조~제3조)

나. 농산물안전분석실 의뢰 및 운영(안 제4조, 제5조)

다. 분석 결과 통지 및 활용, 사용의 정정(안 제6조~제8조)

라. 수수료 및 수수료의 면제(안 제9조,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소비자기본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안전분석실”은 분석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 및 대상) ①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분석 등을 하려는 대상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은 구미시 관내에 주소지, 소재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채취한 시료 및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료로 한다.

제5조(분석의 거부)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시험 등에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여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4. 분석 의뢰인이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분석 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
-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 대상 시료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서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결과서의 활용) ①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서를 발급 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분석결과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② 분석결과서는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한 자에게 「소비자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등)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납부규칙 등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미시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둔 농업인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구미시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분 석 의뢰서(제4조 관련)				
신청인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도로명주소)		
생산정보	생산자	☐ 상 동		
	생산지 주소	(지번주소)		
	작물명		접수량	kg
목적(용도)		☐ 참고용	검사항목	농산물잔류농약
농산물안전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검사결과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구미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구미시농업기술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검사결과서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청인께서는 본 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인이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분석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증			
의뢰인 성명		시료 접수일	
분석의뢰항목		결과 통보예정일	
위와 같이 시료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 분석 결과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담당(054-480-4282)			

[별지 제2호서식]

분 석 결 과 서(제6조 관련)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 소			
생산자	성 명			
	생산지 (재배필지)			
접수일자			분석목적	
검사품목			분석항목	잔류농약 463종
분석결과	검출성분	검출치(mg/kg)	허용기준(mg/kg)	검토의견

년 월 일

위와 같이 분석결과서를 교부합니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인

본 분석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②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④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7조(시험 등의 거부) ①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1. 시험 등에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여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상 물품이 시험 등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시험의뢰기간 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시험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기구 등으로 시험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4. 시험 의뢰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 물품 등이 있을 때에는 그 대상 물품 등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등) ①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실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고지서 등) ① 고지서 등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
2. 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다음 날

② 고지서 등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지방세
2. 납입고지서: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외의 수입
4. 납입서: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③ 제2항의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 「소비자기본법」

제80조(시정의 조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분석기기 유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실시에 따른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
(안전행정부 예규 제176호, 2021.9.6)에 따라 보조인력 운영 관련 비용은 원가산정의 구성요소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기본으로 한다.

나.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이 2022년 상반기 예정이므로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농산물안전분석실을 운영할 경우 2022년 116,612천원을 포함하여 2026년까지 619,107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천원)

구 분 \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 출	116,612	120,110	123,713	127,425	131,247	619,107

☞ 1차년도 : 12개월분 비용 / 2차년도 이후 매년 인상률 3%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 분 \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116,612	120,110	123,713	127,425	131,247	619,107
기 타						
합 계	116,612	120,110	123,713	127,425	131,247	619,107

5. 작성자 : 기술개발과 송 태 복 (054-480-428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금액 (천원)	산출내역
합 계	116,612	
노 무 비	29,012	○ 14,506천원 × 2 명 : 29,012
재 료 비	70,000	○ 농산물안전분석 재료 구입 : 50,000 ○ 분석기기 소모품 구입 : 20,000
일반관리비	17,600	○ 사무용품 : 5,000 ○ 분석장비 유지보수 : 3,000 ○ 유해화학물질취급설치·정기검사 : 3,000 ○ 안전검사 수수료(작업환경측정 등) : 4,000 ○ 실험실패기물 처리 수수료 : 1,000 ○ 데이터 정도관리 수수료 : 1,600

소 관 부 서		기술개발과
입 안 자	과 장	최 용 희
	담 당	김 은 경
	담 당 자	송 태 복 (480-4282)